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356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따라 감리자는 필요 시 하수급인의 시공 자격 및 소속 건설기술인 배치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아 불법하도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금년 7월 17일부터 감리자가 주택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이 건산법에 따른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주택법」이 개정('24.1.16.)됨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하수급인, 건설기술인(소속 현장대리인)의 자격 확인을 위한 절차 및 조치사항, 현황 관리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법제처에서 권고한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리자 업무 추가(안 제4조)

- 감리자의 업무에 “하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소속의 현장대리인의 시공

자격에 대한 적정성 확인” 추가

나. 하수급인등의 시공자격 확인 절차·조치(안 제23조의2 신설)

- 감리자는 하도급공사 착수 15일전까지 시공자로부터 하수급인의 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받아 적정성 확인. 필요시 소속의 현장대리인의 시공자격에 대한 적정성도 확인할 수 있음
- 감리자는 하수급인등의 시공자격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해당 하도급공사 착수 7일전까지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제출
- 감리자는 시공자가 하수급인등의 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한 결과와 다르게 하도급 공사를 하는 경우 지체없이 공사를 중지시키고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통지
- 감리자는 하수급인등의 시공자격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함

다. 감리보고서에 하수급인등의 시공자격 확인결과 제출(안 제24제2항)

- 중간감리보고서 제출 시 또는 사용검사 신청 시 하수급인등의 시공자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후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라. 하수급인등의 시공자격 확인 서류 비치·열람(안 제28조제1항)

-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기간 동안 하수급인등의 시공자격에 대한 적정성 확인 현황 서류를 비치하고, 사업주체·사업계획승인권자 요구시 열람에 협조하여야 함

마. 최종감리보고서에 확인자료 포함(안 제29조제4항)

- 감리자는 사용검사 신청 시 하수급인등의 시공자격에 대한 적정성 확인

현황을 포함한 최종감리보고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바. 감리자가 보고한 확인사항 점검·평가(안 제30조)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보고한 하수급인등의 시공자격에 대한
적정성 등을 점검·평가하여야 하며, 감리자는 성실히 응해야 함

사. 어려운 용어 정비(제10조제1항, 제10조제2항제1호·제2호, 제11조제1항
제2호, 제15조제2항제1호·제2호, 제19조제1항제2호아목)

- 도근점 → 도근점(지형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점이 부족할 때 보조로 설치
하는 기준점)
- 수준점 → 수준점(높이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수준원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
- 절토부 → 절토부(땅깎기를 한 부분)
- 성토부 → 성토부(흙쌓기를 한 부분)
- 구배 → 구배(기울기)
- 암거 → 암거(땅 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
- 가수준점 → 임시수준점(비영구적인 것으로서 비교적 단기간 동안만
사용할 의도로 만들어진 수준점)
- 비계 → 비계(飛階)
- 모따기 → 모따기(모서리를 둥그스름하게 떼어내거나 비스듬하게 깎는 일)
- 행거볼트 → 행어볼트(hanger bolt; 한쪽 끝은 뾰족한 나사못이고, 다른
끝은 너트를 연결할 수 있는 나사산이 있는 머리 없는 볼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4월 2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8, fax 044-201-5684)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 044-201-489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